

성고문 사건 변론 요지

권양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슬픔과 절망으로 왔으나, 이제 우리는 가슴 가득한 기쁨과 희망으로 권양의 승리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합니다. ...

이 엄청난 사건의 진실은 만천하에 날날이 공개될 것이며, 그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들었던 모든 어리석고 비겁한 책동은 하나도 남김없이 더파될 것입니다.

1.

변호인들은 먼저 이 법정 of 피고인석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권양—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없는 유명인사, 얼굴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가?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눈물없이 상기할 수 없는 「권양의 투쟁」—저 처참하고 쓰라린, 그러면서도 더 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인간성에의 투쟁에 대하여, 그리하여 마침내 다가올 「권양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해맑은 연꽃처럼 오늘 이 법정을 가득히 비치고 있는 눈부신 아름다움, 그 백설같은 순결, 어떤 오욕과 탄압으로도 끝내 꺾을 수 없었던 그 불굴의 용기와 진실을 위한 눈물겨운 헌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법정에서 이룩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운동권학생」이니 「위장취업자」니 하는 낯선 이름으로 불리우는 젊은이들의 무리가 등장하였습니다. 공안당국의 눈에 이 젊은이들은 단순한 하나의 치안교란요인, 질서파괴를 위한 선동꾼,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태평성대에 일부러 혼란을 조성하기 위하여 태어난 하나의 이방인 집단, 피도 눈물도 인간적 감정도 없는 정신적 기형아, 불가사리처럼 사회를 쪼먹는 괴물, 심지어는 악마로까지 보일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권양에 대한 성고문사건에 관한 검찰수사결과발표가 있을 때 도하 각 신문에 함께 보도된 「공안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이 젊은이들은 상투적으로 거짓말과 조작을 일삼는 사기꾼처럼,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패륜아, 심지어는 인륜도덕과 성까지도 도구화하는 이념적냉혈동물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공안당국적 시각(視角)은 지극히 명백한 한가지 사실—즉, 이 젊은이들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사회에서 자라난 우리의 아들딸이요 형제자매라는 사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운동권」에 뛰어들고 「위장취업」자가 되게 된 것은 이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병폐—이 젊은이들의 순결한 양심으로 하여금 도저히 소리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온갖 불의와 비리, 억눌린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도덕적 결단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는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하고서도 그 성과로부터는 철저히 소외되어 온 대다수 노동계층의 현실, 「선진조국」을 운위하게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기본급 10만원미만 짜리가 허다한 살인적 저임금과 세계적으로 가장 혹심한 장시간 중노동,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면서 열사와 천대 속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아픔, 남들이라면 한창 부모품에서 재롱을 부릴 나이인 열세살의 어린 소녀시절부터 소음과 먼지로 뒤덮인 숨막히는 작업장 원단 더미 속에 파묻혀 십년여일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소갈 틈도 없이 잔업에 철야에 빠빠지게 노동을 하였으나 남은 것은 병든 육신과 지칠대로 지친 영혼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스물세살 미성사의 눈물,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를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구로공단 of 뒷골목을 힘없이徘徊하는 해고노동자들의 탄식, 기본급 10만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폭력배들에게 머리채를 꼬잡힌 채 각목과 발길질로 집단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구속노동자의 분노,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속에서도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인간다운 삶의 꿈 때문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꽃다운 젊은 목숨을 스스로 불길속에 던져넣는 분신노동자들의 잇다른 참혹한 죽음—바로 이런 것들이 보다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이 젊은이들, 어쨌거나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던 행운을 타고 난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행운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도록, 더 이상 그 부모들이 기대하는 대학졸업의 경력에 걸맞는 안일하고 안전한 삶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대신에 「운동권」과 「위장취업」의 험난한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라는 사실,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동안 기성세대가 보여주지 못했던 놀라운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 36년의 이민족지배와 외세에 의한 분단의 쓰라린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도덕적 건강성은 심대하게 훼손되었고 사회적 양심은 거의 마비되다싶이 하였습니다. 우리의 최근 세사는 불행하게도 권선징악의 교훈에 친하지 못합니다.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웅당한 응징이 가해진 일이 없었고 한편 수많은 항일투사와 그 자손들의 불우한 생애가 웅변적으로 보여주듯이 민족과 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에 대하여 그 어떤 정신적 보상조차도 주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이같은 왜곡된 역사 속에서 우리들 대다수의 기성세대는 일찍부터 부모들과 선배들과 사회로부터 힘앞에 순종하고 체제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자기만의 안일을 추구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 비겁하며 왜소한 인간이 되도록 교육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들 기성세대의 뇌리에 깊이 주입된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체제철학에 의하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란 한낱 제란으로 바위치기에 지나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가난하고 억눌린 이웃에 대한 관심이란 곧바로 개인적인 몰락과 패가망신의 길을 가리키는 위험표지판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같은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 오늘의 젊은이들이 대학출신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하여 일생을 걸고 노동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로 비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기성세대는 우리들의 척도로 이 젊은이들을 판단하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 하나의 새로운 세대,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 그들의 양심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젊은 세대가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민주화의 국민적 갈망을 불러일으킨 4.19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된 60년대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일깨운 전태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70년대, 그리고 광주사태라는 엄청난 민족적 참화로부터 시작된 80년대의 시련을 거치면서 서서히 회복되어 온 우리 민족의 도덕적 원기와 사회적 양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젊은이들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나마 현실의 벽 앞에 부딪쳐 절망한 나머지 파괴적 충동에 휩싸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은 우리 사회가 이 젊은이들의 항의와 비판을 경청하고 거기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응할 자세를 갖추게 될 때, 그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가 확립되고 사회정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기울여지며 사회의 도덕적건강성이 회복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유되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반드시 그같은 과정을 통하여서만 치유되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며, 그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젊은이들이 노동현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탓하거나 억압하려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해두고자 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본 변호인단은 이 젊은이들이 노동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 삼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이 젊은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도덕적 용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밝은 내일을 예감케 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징후이며, 본의전 아니건 알게 모르게 기성사회의 부패와 사악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 중 누구도 이때 묻지 않은 순결한 젊은이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단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만약 정부 당국이 진실로 사회의 안정질서와 평화를 이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세대를 선불리 백안시하거나 이단시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뜨거운 애정으로 이들을 포용하여야 할 것이며, 물리적인 탄압과 처벌로 이들을 꺾으려는 헛된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사회의 누적된 비리와 병폐를 척결함으로써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심으로 권고하고자 합니다.

3.

이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권양은 이같은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 중 한사람입니다. 그녀는 성실한 공직자

가정의 막내딸로서 이렇다할 생활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채 순탄한 성장과정을 밟았으며 타고난 명민한 자질로 원주여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당시 원주법원에 재직하였던 어떤 분으로부터, 권양이 서울대학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직원들이 권양의 부친에게 경사라고 축하의 인사를 하고 권양의 부친이 흐뭇해 하던 일이 눈에 선한데 그 권양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다니 실로 감회가 무량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권양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명하고 축복받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라난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 피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당시 여고 2년생이었던 권양은 동급생들과 함께 목을 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와 사회에서 가르친 대로 「유신만이 살 길」이며 박대통령만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영도할 수 있으며 「한국적민주주의」만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유일한 정치체제라고 조금도 의심없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순진한 소녀에게, 박대통령의 피살 소식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욱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은, 박대통령이 피살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무도 더 이상 유신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말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날이 갈수록 유신체제를 공공연히 비판하고 부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으며, 옛그때까지만 해도 그토록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박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로 추켜세우던 세상 사람들이 일변하여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육과 독재, 그리고 그 아래서의 부패와 비리를 거론하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이래 여고 2년생이 되기까지 기성세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고 그래서 의심없이 믿어왔던 것이 실은 거짓이었으며 속은 것이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진실 앞에서,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한 그녀의 신뢰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권양은 이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신문을 보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정의와 진실에 대한 관심, 정치와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내학에 진학한 후 권양은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번민을 거듭하던 끝에 같은 세대의 다른 많은 젊은이들처럼 대학생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어떤 공장에 취업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가명 입사 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한 나머지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이것이 권양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변호인들은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누가, 무슨 권리로, 이러한 권양의 행위를, 그 양심의 표현을 단죄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검찰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권양은 노동현장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일런지는 몰라도 진실은 아닙니다. 1984. 4. 24. 노동부는 “앞으로 각 기업체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학력과 경력은 물론 본인의 면담 등을 통해 신상심사 등 취업희망자의 신원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측에서는 대학출신 노동자들이 불법적 쟁의를 선동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들을 해고조치하기 시작하였고 1985년 이후부터는 대학출신노동자들이 학력은폐의 수단으로 작성, 제출한 타인 명의의 이력서나 주민등록증 때문에 형

사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당국의 의도는 대학출신자의 노동현장취업 자체를 저지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주민등록증 변조 등을 사유로 한 형사처벌은 이 취업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 명백합니다.

당국은 대학생 출신 노동자들이 순수한 노동자들과는 달리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노동현장에 취업하는 것이 마치 무슨 불순하고 불법적인 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는 노동운동의 자유를 그 불가결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대학생이든 누구든 그 양심에 따라 노동자로서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헌법이념상 당연히 시인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 자체를 불온시하는 당국의 견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체들이 대학출신 노동자들을 채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부당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이같은 부당한 의도는 우리 헌법의 인간적 존엄성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장취업」은 이같은 기업주 측의 부당한 의도로부터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정당하며 합헌적인 목적을 방어하고 관철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며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대학출신자가 남의 이름을 빌어 노동현장에 취업하고 그 때문에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비난 받을 수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질서의 관점에서 시인되어야 할 적법한 행위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즉, 이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양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결백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정법상의 유·무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권양의 행위에 관하여 진정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그토록 엄청난 범죄였는가, 6월 7일 토요일 깊은 밤에 부천경찰서의 불려진 한 조사실에 두시간 가량이나 갇혀 금수와 같은 형사 하나와 단 둘이 대면한 가운데 노예처럼 뒋수갑을 채우고 처녀의 부끄러운 알몸을 발가숭이로 벗기우고 필설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야만적인 능욕과 고문을 당했어야 마땅할만큼 엄청난 범죄였는가, 그것도 부추하여 「공안당국」으로부터 만천하 공개리에 저 건딜 수 없는 모욕,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하는” 이념적 냉혈녀요, 있지도 않은 성고문 사실을 허위조작하여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한 추악한 마녀인 것처럼 터무니 없는 모략중상을 당하여도 좋을만큼,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처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그토록 여지없이 짓밟혀도 좋을만큼, 그토록 엄청난 범죄였는가, 또 그처럼 철저하고도 잔혹한 인간적 파괴와 오욕을 당하고 나서도 아직껏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할 만큼, 그 분노와 절망에 지칠대로 지친 영혼과 육신을 억지로 지탱하면서 수개월 동안이나 차디찬 철창 속에 갇혀 있어야 할만큼, 그토록 엄청난 범죄였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변호인들은 깊은 분노로 말합니다. 이 재판은 거꾸로 된 재판입니다. 여기에 묶여서 재판받아야 할 것은 이 연약하고 순결무구한 처녀가 아니라 바로 이 처녀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도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만행을 저지른 문 귀동,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인권과 인륜

도덕을 그 근본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유린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성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도 지닐 수 없게 만든 극악극흉한 범죄를 저지른 문 귀동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아울러 문 귀동의 범행을 교사, 방조하였던 모든 사람들, 문 귀동을 비호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려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 귀동이 의범처단되지 않는 한, 권양에 대한 이 재판은 원천적으로 불의한 사태인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 어느 누구도 문귀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바깥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터에 권양이 묶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태를 도저히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변호인들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권양은 더 이상 묶여 있어서는 안되며, 바로 이 자리에서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4.

권양이 부천경찰서에서 당했던 일, 저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스럽고 더러운 만행의 자세한 경위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양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는 이제 온 세상에 알려져 있고, 정부당국이 그토록 그 진상을 은폐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양의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문에서 이 전대미문의 성고문사건에 대한 보도를 막으려는 당국의 집중적인 보도통제노력 때문에 권양의 주장 내용조차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있을때, 성고문의 진상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려는 정당·사회단체의 폭로대회가 매번 경찰의 필사적인 제지로 방해되었을 때, 성고문에 항의하던 사람들이 술하게 잡혀들어가고 유인불들이 수없이 압수되었을 때, 검찰이 그 실제 수사결과와는 상반되는 터무니 없는 “수사결과발표”라는 것을 하고 “공안당국”이 권양에 대하여 온갖 모욕을 퍼부었을 때, 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전후 모순되는 이유설시 아래 어처구니 없이 기각되었을 때, 그때마다 권양의 진실은 그것을 끝내 은폐하려는 강대한 권력의 힘 앞에 부딪쳐 차단되고 좌철되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진실을 필사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허둥대는 권력의 모습에 의하여 한단계 한단계 승리의 길로 전진해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진실은 끝내 알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감방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그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실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법원결정문은 그 이유설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문귀동의 이 사건 피의사실 중 피의자 문귀동이

가. 1986. 6. 6. 04:20경부터 06:30 사이에 부천서 수사과 조사계 제 5호 조사실에서 위장취업과 관련하여 연행된 피해자 권양을 상대로 5.3 인천소요사태 수배자와의 관련 및 소제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그녀가 모른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젖가슴을 들추어보고 그녀의 바지지퍼를 끌러내린 다음 같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근무 순경인 피의자 이흥기를 불러 입회시킨 가운데 그녀에게 화난 소리로 “이년” “저년” “웃 벗어” 등 폭언을 하고 “5.3사태 관련 여자 아이들도

나한테 걸리면 금방 다 자백했어”라고 은근히 진술을 강요하면서 위협을 하여도 불응하자 그녀의 티셔츠위로 젖가슴을 3, 4회 만지고 위 이홍기 순경을 향하여 “이년 안되겠군” “고추가루볼 가져와”라고 말하며 마치 고추가루볼로 고문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나. 같은해 6. 7. 20:30경 그녀의 자켓과 남방셔츠를 벗게한 후 건너편 제3호 조사실에서 일하던 순경 김해성에게 수갑을 가져오게 하여 위 권인숙의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거짓말 하지 마라”며 고함을 지르고 그녀를 세면바닥에 무릎 꿇게 하다가 약 30분 후인 그날 21:00경 위 제1호 조사실과 바로 붙은 위 조사계 북서쪽 구석에 있는 피고인의 방인 제2호 조사실로 그녀를 끌고가 그때부터 그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불도 켜지 않아 실내가 어둡고 약 12미터 떨어져 있는 무기고앞 외등의 불빛에 의하여 겨우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방 안에서 단 둘이서 피고인은 북쪽으로 난 피고인의 책상 앞 창가에 앉아 위 권인숙을 가까이 오라고 하여 그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자기 바로 앞에 놓여있는 철제의자에 그녀를 앉게하고 그녀 가까이 다가 앉으면서 그녀의 상의를 모두 올리고 양손으로 젖가슴을 만지면서 “간첩도 결국은 분다, 너같은 독한년은 처음 본다”고 겁을 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허리부분과 상체를 어루만지는 등 추행을 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귀동이 불려진 방에서 권양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게한 채 권양의 상의를 모두 올리고 권양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양손으로 젖가슴을 만지고 허리부분과 상체를 어루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문서도 아닌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더구나 그것도, 국민의 편에 감연히 서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는 재판부가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기로는 필경 권력의 유형·무형의 압력 앞에 견디지 못하여 사법권의 존엄과 법관의 긍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재정신청기각이라는 부당한 결론, 권력의 의도에 맞는 결론을 내린 재판부가 작성한 결정문인 것입니다.

이 법정문이 나옴으로써, 이제 그 누구도, 경찰·검찰 「공안당국」 또는 그밖의 그 어떤 측도 더 이상 권양의 진실 앞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권양의 성고문주장이 허위조작이나 진실이나 하는, 저 한동안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우리를 통분으로 질식케 하였던 어리석은 논쟁은 이제 이것으로 끝장난 것입니다. 권양의 완벽한 도덕적 승리로 결판이 난 것입니다. 권양을 모함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권양의 피해주장을 운동권세력의 상투적인 허위조작이라고 매도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입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누가 더 이상 권양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지 나서보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누가 과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상투적인 허위조작과 모략을 일삼는 거짓말쟁이인지, 어느쪽이 과연 목적을 위해서는 성과 인륜도덕마저도 도구화하기를 서슴지 않는 세력인지는 이것으로써 명

백히 판명이 났습니다.

물론, 이 고등법원결정문이 권양의 주장내용을 액면대로 전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귀동의 범행 사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고 추잡한 대목— 특히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음부에 비비는” 추행을 한 대목에 한해서는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이 결정문은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극히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정황사실에 이르기까지 다 권양의 주장대로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어째서 이 마지막 대목만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인가— 요컨대, 이 대목만은 문귀동이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고 당시의 주변상황으로 보아 문귀동이 “그토록 저열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자가당착적인 꾀변입니다. 우리는 묻노니, 그렇다면 명색이 형사라는 자가 조사받는 처녀를 불려진 방에 가두어 놓고 뒷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게하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바지 지퍼까지 내리고 젖가슴을 주무르고 “허리부분과 상체”를 어루만지는 것은 그다지 “저열한” 일이 아니고 그다지 “비정상적방법의 추행”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의 추행은 “정상적”인 추행으로서 “일반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것처럼 정상적인 윤리감정을 갖춘 인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무도한 비정상적 추행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인정하는 터에 어떻게 거기서 불과 반발짝 더 나아간 것밖에 안되는 추행만은 주변상황으로 보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그 누구도, 아니 그 자신조차도 설득시킬 수 없는 허악한 자가당착적 논거를 가지고 문귀동의 범행사실 중 그 일부분만을 억지로 부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가 열망하여 마지않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진실로 애석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5.

회고하건대, 저 잔악한 체구의 처녀가 지난 6월 6일과 7일 부천서에서 저 무도한 야수적 능욕을 당하고, 산산히 파괴된 인생의 절망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비통한 자기모멸감과 수치심 그리고 출구를 알 수 없는 치명리는 분노에 시달리면서 경찰서 보호실에서 유치장으로, 다시 교도소의 감방으로 짐짝처럼 넘겨질 때에, 그 순간 순간마다 그녀의 뇌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오직 자기파괴와 죽음에의 충동, 그리고 한시도 떠나지 않은 악몽속의 가위눌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양은 이 죽음과 같은 절망을 뚫고 부활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며 실로 위대한 결단과 용기로 진실을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권양이 겪은 저 전인미답의 지옥과 같은 고통과 번민, 좌절과 망설임, 그 악몽의 시간에 대하여 우리는 실로 눈물 없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을 위하여, 오직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권양은 처녀로서의 수치심과 명예를 모두 내던져버렸으며, 처녀로서는 차마 밝힐 수 없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

기 위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건 눈물겨운 결단은 우리들의 잠들어 있던 양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권양의 외로운 절규는 저 두꺼운 감방의 벽, 저 엄청난 억압의 벽을 뚫고 나와 마침내 세상사람들의 가슴가슴에 닿았습니다. 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기경에서 이름없는 시골촌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와 학생에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실로 그 수효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소리없는 외침으로 권양을 성원하고 축복하였으며 권양의 영혼이 피로써 내걸은 인간성과 진실의 깃발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혹은 교도소로 혹은 변호인들의 사무실로 수없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가정주부는 변호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딸을 낳았는지, ……권양을 위하여 기도를 하려면 목이 메입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부천경찰서로 몰려가 항의하다가 체포된 사람들도 있었고 인천 지방검찰청에 신나통을 들고 들어가 시위를 하다가 현주건물방화죄로 구속기소되는 여대생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고위공무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공무원으로 양심을 속이고 남았을 수가 없다고 양심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공무원에게 “권양의 고통과 용기에 동참하여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폭로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될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명동성당과 해인사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성고문을 규탄하는 기도회와 집회가 잇달아 개최되었습니다. 이 권양의 대열에는 남녀노소의 구별도, 도시와 농촌, 사회계층의 구별도, 수녀와 승려, 신부와 목사, 종교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우리 변호인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여 미미한 노력이나마 보탬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것을 더 없는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권양과 더불어 요구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파헤치고 문귀동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을 의법처단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추악한 공권력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였으며, 아무 지나칠 것이 없는 요구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륜도덕과 법질서를 위하여,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니되는 필수적인 요구였으며 정치적견해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양식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도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권양의 눈물겨운 요구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대하여, 국가의 공권력은 과연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범행 당사자인 경찰은 무엇을 하였는가?— 만약 경찰이 그 스스로의 사명,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법질서를 최전선에서 보호해야 할 경찰로서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엄두에 두었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관이 다른 장소도 아닌 경찰서 안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이처럼 있을 수 없는 추악한 패륜의 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마땅히 스스로 범행전모를 철저히 파헤치고 국민앞에 솔직히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였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처음부터 전조직을 총동원해 다시피 하여 새빨간 거짓말을 조작하면서 범행일체를 은폐하려고 나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반하장격으로

권양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는 문귀동이 당초에 그토록 당당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나서고, 만천하를 상대로 감히 터무니없는 조작된 알리바이까지 들고 나오면서 권양을 조사한 횡수와 시간 등 가장 기초적인 사실에서부터 거짓말을 일삼고, 심지어는 후안무치하게도 권양을 상대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고소까지 제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막강한 경찰조직의 뒷받침을 배경으로 산지 않고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귀동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이러한 의혹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명백한 현실로써 입증되었습니다. 문귀동은 실제로는 6월 6일 새벽과 6월 7일 아침, 그리고 6월 7일 밤 9시경부터 11시경까지의 세 차례에 걸쳐 권양을 조사하였고 6월 7일 밤의 마지막 조사 때에는 입회 형사가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조사하였는데,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문귀동은 진술하기를 자신이 권양을 6월 7일 저녁 7시반경부터 9시반경 사이에 세명의 형사를 입회시킨 가운데에서 단 한 차례 조사하였을 뿐이며 6월 6일에는 아예 부천경찰서에 출근한 사실조차 없었고 당일 송추로 놀러갔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불려나온 부천경찰서장, 수사과장 이하 모든 형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추어 이 문귀동의 거짓말을 완강하게 뒷받침하다가 제반 객관적인 관계증거에 의하여 허위임이 탄로되자 비로소 진술들을 번복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경찰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피의자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질책을 하고 마치 당연한 일인양 고문까지 일삼는 그 경찰이, 어떻게 이처럼 경찰서 하나의 조직을 총동원하여 엄청난 거짓말을 꾸며대며 집요하게 검찰을 기만하고 수사업무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스스로 하나의 범죄조직, 범행은폐조직으로 전락해버린 경찰에게 우리가 어떻게 더이상 범죄수사와 법질서유지의 책임을 맡길 수 있었습니까?

경찰은 그 명예와 위신의 실추를 막기 위하여 성고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경찰의 명예와 위신은 정작 성고문 범행자체보다도 오히려 그 범행을 은폐하려 들었던 경찰의 부도덕성 때문에 여지없이 실추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실추된 명예와 위신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이같은 범행은폐의 과오에 대하여 국민과 권양앞에 사과하고, 경찰조직내부의 성고문범행 관련자는 물론이요 그 범행은폐책동에 공모가담하였던 일체의 관계자들도 남김없이 적발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처단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는 바로 이것을 경찰에 요구합니다. 만약 경찰이 이것을 끝내 거부할 때에는, 우리는 경찰에 대하여 도덕적 파산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범죄수사의 주체이며 인권옹호직무의 담당자인 검찰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들 변호인들은 분노보다도 먼저 슬픔이 앞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이 성고문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전례없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진실을 추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노고가 많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인천지검의 수사인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사건 당사자인 권양과 문귀동, 그리고 43명의 참고인들을 상대로 연일 불철주야로 집중적인 조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문귀동과 부천서 간부진 및 형사들이 조작해 낸 모든 거짓진술들

을 날날이 타파하였고 권양의 모든 주장이 진실임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폭언·폭행은 있었으나 성모욕행위는 없었다”는 검찰수사결과 발표는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울고등법원재정신청사건 재판부는 다른 독자적인 증거조사는 일체 시행하지 않은채 오로지 검찰수사기록만에 의거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귀동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적어도 문귀동이 권양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바지저퍼를 내리고 젖가슴을 주무르고 허리와 상체를 주무르는 등의 성고문을 한 사실만은 검찰수사기록상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처럼 “수사기록상 명백한” 성추행사실마저도 끝내 부인하려고 든 것, “젖가슴을 주무른 것은 아니고 티셔츠를 입은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서너차례 쥐어박은 것”이라고까지 강변하여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까?

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단순히 문귀동의 성고문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권양이 “폭행사실을 성모욕행위로 날조·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일선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반체제혁명투쟁을 사회일반으로 확산시켜 정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하였다고 악의적인 중상모략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그 자신의 실제수사결과론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너무나도 상반되는 어처구니 없는 「수사결과 발표」를 하게 된 데 대하여, 변호인들은 일찌기 검찰발표과정에 검찰권의 독립적행사를 저해하는 외부세력의 작용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은 그 소신에 어긋난 수사결과발표,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전국민을 기만·우롱하고, 권양의 명예와 자존심을 여지없이 유린한 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해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 내용이 밝혀짐으로써 검찰의 수사결과발표가 고의적인 허위발표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지껏 검찰에서 국민 앞에 이렇다 할 사과나 해명의 말 한마디가 없고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합니다. 검찰의 직분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는 검찰이 이 사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종전의 발표내용을 철회하고 그 경위를 해명하고 사건의 진상을 백일하에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결정으로 적어도 문귀동이 권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무고임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문귀동을 무고죄로 추가입건하여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검찰이 권양에게 가한 저 부당하고 부도덕한 정신적 학대에 대하여 사과하는 의미에서라도, 권양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검찰이 이 중 어느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그 본래의 사명에 부응하는 「진정한 검찰」을 갖지 못한 비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워지는 사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날의 사법부의 유감스런 현실

에 대하여 우리는 굳이 장황하게 말씀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이성고문재정신청사건에 관해서만큼은 사법부에 대하여 한 가닥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었읍니다.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결정을 탄원하기 위하여, 166명이라는 우리 법조사상 초유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권양을 대리하여 재정신청에 나섰읍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인권과 인륜도덕의 존폐가 걸린 최후의 방어선이 되다시피 한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정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최소한의 양식에 입각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기를, 그리하여 법의존업과 사법권의 독립이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재야법조계의 한결같은 열망의 표현이었읍니다. 국민 누구나가 납득하지 아니하는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결정, 검찰 스스로도 납득하지 아니할 그 상식에 어긋난 기소유예결정을, 그래도 명색이 사법부에서 설마 그대로 시인할 리가 있겠는가,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시일을 끄는 일은 있을지언정 차마 재정신청을 기각하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같은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문귀동이 저지른 야수적인 성고문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살피건대 우리헌법 제 9조가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규범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형사피의자를 위협하고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응징하여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라고 실시하기까지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천만뜻밖에도 문귀동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상당하다고 시인하면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읍니다.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히 응징되어야 마땅할”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적절하다니, 도대체 이같은 자가당착이 어디에 있으며, 도대체 이것이 법관의 양식으로써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더우기, 위 법원결정문이 기소유예처분이 상당하다는 논거중의 하나로서 “문귀동이……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한 비등한 여론과 피의 사실로 인하여 형벌에 못지않은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르러서는, 우리는 실로 망연자실, 할 말을 잊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사회여론의 지탄을 받는 극악범죄일수록 형사처벌은 가벼워져야 옳다는 말인지, 국가는 범죄자의 응징과 범죄의 예방을 사회여론에 내맡기고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말인지, 검찰과 법원은 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인지—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어쨌서 우리 사법부가 이처럼 어불성설의 궤변까지 동원해가면서 한사코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옹호하여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마치 이 나라에는 문귀동이 한 사람의 인권만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 환각마저도 일어납니다. 우리 변호인들은 이른바 가정과피범들의 소행에 비하여 문귀동의 범행이 과연 어느만큼이나 덜 흉악하고 덜 파괴적인 경미한 범행으로 평

가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가정과피범들에 대하여는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포기했다”고 하는 이유로 일말의 동정도 없이 사형을 선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로 그 사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가정과피범보다도 더욱 가증스럽고 더욱 용서받지 못할 야수적만행을 저지른 문귀동에 대해서만은 유독 자상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온갖 있는 정상, 없는 정상을 다 들추어 내어가며 용서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사법부의 본의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확신을 가지고 말하거니와, 이것은 결코 독립된 사법부가 스스로의 법률적 양식과 양심에 입각하여 내린 판단일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오늘 우리 사법부의 몰락을 봅니다. 아무리 뼈아프더라도 이 말을 들어주시시오. 사법부는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한 그릇의 죽을 얻는 댓가로 장자상속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사법부는 한갓 구구한 안일을 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막중한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하여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법관 개개인들만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이 사태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법부로서는 이 사태의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하려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법부, 스스로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할 자격이 없읍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말하거니와 이 재정신청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법부의 존립근거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 사태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법관들이 깊이 통찰하고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건곤일척의 몸부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 도래하였다고 우리는 믿읍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보루이라는 언론은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일선취재기자들을 비롯하여 제도언론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한된 여건 아래서 최소한으로나마 권양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숨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의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도로서의 언론 전체가 이 사건에서 보여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편파보도, 권력에 대한 굴종과 국민에 대한 배신의 타락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이 사건에서 성고문의 진상을 은폐·왜곡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내용이나 아무런 근거없이 등 뒤에서 칼을 찌르듯 일방적으로 권양에 대하여 악의적인 비상·중상을 퍼부은 이른바 「공안당국의 분석」내용이란 것은 액면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였으나, 권양측의 주장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읍니다. 심지어는 권양이 주장하는 성고문피해사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읍니다. 권양이 당한 성고문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이 엄청난 만행에 공분을 느낀 술한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성고문내용을 알리는 유인물 등을 자발적으로 인쇄 또는 복사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 그같은 매스컴 이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수공업적 통신과정을 통해서였읍니다. 과연 이렇진대, 비대한

대로 비대한 제도언론은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그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언론의 존재이유와 존립근거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위험한 사태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공당국이 수시로 각 신문에 이른바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시달해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폭로한 자료가 시중에 유포된 것을 본 바에 의하면, 이 성고문사건에 관한 검찰수사결과발표당시를 전후하여 문공부는 연일 집중적으로 성고문사건에 관한 “보도지침”을 시달하였고, 거기에서 보도해야 할 기사와 보도되어서는 안 될 기사, 보도할 기사의 크기와 보도내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였읍니다. 우리는 당시 각 일간지에서 실제로 보도되었던 내용이 위 문공부 “보도지침”을 거의 그대로 준수한 것이었음을 발견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읍니다. 물론, 모든 언론이 이처럼 정부권력의 홍보자료로 전락해 버린 이 압당한 사태는 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언론인들이 이 사태의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말기를 호소합니다. “힘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같은 변명이 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히틀러 치하에서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가담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쟁취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싸움에 앞장서야 할 것은 누구보다도 언론인들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언론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주어질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이 몸부림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양의 변호인들로서, 언론에 대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권양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발표내용이나 「공안당국의 분석」내용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편파보도를 시정하고 권양을 근거없이 비방·중상하는 술한 기사들이 보도된 경위를 일일이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 낼 때에만, 언론은 자신이 그동안에 권양에게 가한 부당한 박해— 한 연약한 처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언론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국가와 권력의 존립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인간적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정당한 이유를 지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공권력이 거꾸로 국민의 인간적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적가치의 실현을 제약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같은 공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여야 할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고문사건은 진전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성의 권력과 권위들이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었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에 대하

여 말한 것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권양에게 가한 온갖 부도덕하고 비열한 박해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전반적인 도덕적위기의 한 징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확신 하거니와, 이 도덕적 위기야말로 그 어떤 군사적, 정치적 혹은 사회 경제적 위기보다도 앞서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인 것이며, 이것이 정당하게 극복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실로 암담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권양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닥아왔습니다. 지난 7.7. 변호인들이 인천소년교도소로 그날까지 열흘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던 권양을 찾아갔을 때, 권양은 배가 쓰리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도, “이 분노를 그대로 삭힐 수가 없다, 차가운 교도소 마룻판을 베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숨을 건 진실에의 열정 하나만으로, 권양은 끝내 이 불의한 세상의 온갖 권세를 이겨내었습니다. 권양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진실, 다시는 이 땅의 딸들이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는 일이 없어도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이처럼 여지없이 짓밟히는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권양이 그토록 밝히려고 열망하였던 진실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권양이 바친 그 모든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은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뜨거운 감사의 정과 더불어 기억될 것입니다.

권양은 우리에게 “진실애의 비밀은 용기 뿐”이라는 교훈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 혼탁하고 타락한 세대의 신화가 되어버린 권양의 투쟁에서, 일찌기 김수영 시인이 노래하였듯이 “어제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흐르는가를” 배웠습니다.

권양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슬픔과 절망으로 왔으나, 이제 우리는 가슴 가득한 기쁨과 희망으로 권양의 승리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권양이 이미 도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제 머지 않은 장래에 현실적으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진실은 만천하에 낱알이 공개될 것이며, 그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들었던 모든 어리석고 비겁한 책동은 하나도 남김없이 타파될 것입니다.

이 진실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권양이 우리에게 바친 헌신에 만의 일

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믿읍니다.

이제 저 잔혹하였던 여름과 가을을 지나, 권양은 이 법정에 섰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물로써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빛나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순결무구한 처녀는 이 시대의 모든 죄악과 타락과 불의를 속죄하는 제물로서 역사의 제단앞에 스스로를 바쳤으며,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 시대에서 가장 죄가 없는 이 처녀를 더 이상 단 한시라도 차디찬 감옥 속에 갇혀 있게 하는 죄악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권양, 온 국민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은밀하고 고귀한 희망으로 자리잡은 우리의 권양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1986. 11. 21.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고 영 구
변호사 김 상 철
변호사 박 원 순
변호사 이 돈 명
변호사 이 상 수
변호사 조 영 래

변호사 조 준 회
변호사 홍 성 우
변호사 황 인 철
변호사 손 태 봉
변호사 황 산 성
변호사 이 태 영

인천지방법원 귀중

부천경찰서 성고문공동대책위원회

공 대 위
가입단체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수녀회 장상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대책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시민들 스스로 이 내용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어볼 수 있도록 복사하여 돌려보십시오.